

행 정 명 령

**뉴욕주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시의 5 개 자치주 및 더치스 카운티, 나소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록랜드 카운티, 서퍽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재해 비상사태를 선언함**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뉴욕시에서 롱아일랜드를 거쳐 뉴욕주 남동부와 코네티컷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5,000 평방 마일 규모의 지역에서 1,530 만의 인구에게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는 북미에서 가장 큰 교통망이기 **때문에**,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가 매일 735 대의 열차에 주간 평균 301,000 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분주한 통근 철도이기 **때문에**,

500 만 명이 넘는 승객이 매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역사상 가장 많은 승객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매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전한 교통 수단을 제공할 방도가 달리 없기 **때문에**,

뉴욕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실행 가능성 및 뉴욕주 주민과 방문객들의 보호와 생계를 위해 뉴욕시 안팎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대중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욕 카운티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 역(Pennsylvania Station)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하철 탈선, 광범위한 선로 단선, 승객 수십만 명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운행 중단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고장에는 다음 3 건의 지하철 탈선이 포함됩니다. (i) 2017 년 6 월 27 일, 웨스트 128 번 스트리트(West 128th St)의 A 열차(A train), (ii) 2017 년 3 월 24 일,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암트랙 열차(Amtrak train), (iii) 2017 년 4 월 3 일,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뉴저지 트랜짓 열차(NJ Transit train) - 기타 사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 2017 년 6 월 5 일에 1 시간 이상 에어컨이나 전원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웨스트 4 번 스트리트(West 4th Street)와 브로드웨이역(Broadway station)-라파예트역(Lafayette station) 사이에 갇혀 있던 F 기차(F train), (ii) 2017 년 4 월 15 일 전원이거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3 시간 동안 터널에 갇혀 있던 뉴저지 트랜짓 열차(NJ Transit train), (iii) 2017 년 1 월 9 일, 웨스트 4 번 스트리트(West 4th Street)에서 침수된 F 노선(F line), (iv) 2017 년 1 월 24 일, 59 번 스트리트(59th Street) - 콜럼버스 서클(Columbus Circle)의 D 노선(D line)에서 발생한 신호 스위치 고장, (v) 2017 년 3 월 6 일, 퀸즈보로 플라자(Queensboro Plaza)의 N 노선(N line)에서 절손된 선로, (vi) 데칼브 애비뉴(Dekalb Ave)의 D 노선(D line)에서 2017 년 4 월 24 일 발생한 가정용 신호 문제, (vii) 퀸즈 플라자(Queens Plaza)의 E 노선(E line)에서 2017 년 5 월 30 일에 발생한 전원 문제, (viii) 제이 스트리트(Jay St.) - 메트로 테크(Metro Tech)의 C 노선(C line)에서 2017 년 6 월 9 일 발생한 궤도 회로 고장, (ix) 34 번 스트리트 헤럴드 광장(34th St. Herald Square)의 D 노선(D line)에서 2017 년 6 월 20 일에 발생한 신호 장애, (x) 기타 유사한 탈선 및 관련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장, 지난 50 년 동안의 과용량,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고장 등은 뉴욕주의 경제 엔진으로 인정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통근자 교통 지구(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MCTD)의 비즈니스와 상업 분야 뿐만 아니라 통근자, 관광객, 뉴욕 주민들의 건강, 안전, 생계에 막대한 그리고 해로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뉴욕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소유자인 국립 철도 여객 공사(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Amtrak)는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암트랙 수리 프로그램(Amtrak Repair Program))의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일련의 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선로 단선 및 운행 중단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암트랙 수리 프로그램(Amtrak Repair Program) 및 기타 수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선로 단선 및 운행 중단은 대중, 건강, 안전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며 통근자, 관광객, 다른 뉴욕 주민들 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통근자 교통 지구(MCTD) 및 그에 따른 뉴욕주 경제를 이루는 비즈니스 및 상거래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현재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 전체의 상태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교통 재난의 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선로, 신호, 스위치, 기타 교통 인프라의 수리와 이러한 재해 비상사태로 인한 선로 단선 및 운행 중단에 대한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과 그 자회사 및 계열사들이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부법(Executive Law) 2-B 조의 28 항 및 29-a 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주 전역의 재난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일자로부터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음의 법률들을 일시적으로 중지합니다.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1266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1209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1265-a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1265-b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2878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2879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2879-a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 2880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제 139-d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제 139-i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제 139-j 항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또는 기타 서면 합의서에 적용되는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제 139-k 항

환경보전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제 8 조 및 6 NYCRR Part 617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규칙 및 규정,

앞에서 언급한 법률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기 위해 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립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

그러한 재해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 리스, 면허증, 허가서, 프로그램 또는 운영 계획 또는 기타 모든 서면 합의서에 적용될 수 있는 뉴욕주 법령, 지방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다른 조항.

이천십칠년 유월 이십구일 올버니 시에서 자필로

서명하고 뉴욕주 주지사 인감(Privy Seal

of the State)으로 날인하여 작성 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